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 
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(대통령령 제19322호 2006.2.8)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유급화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제명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- 나.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(안 제1조, 제3조)  
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·여비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함)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32조
- 나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(별표5,6,7)

### 4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 안은 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

- 올해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『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』에서 심의 결정하여 지난 5월 1일자로 우리 구의회에 통보 온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금액에 맞게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임
- 검토결과 『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』에서 결정 통보 온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의원 1인기준 연간 총 지급액은 31,080천원으로 작년 21,200천원보다 9,880천원이 추가 인상되었고, 총 연간 소요예산액은 15명의 의원정수 대비 466,200천원으로 작년 16명의 339,200천원보다 127,200천원이 추가 소요됨  
참고로 이는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중 상위 6번째로서 총 금액으로는 중간정도 (진구 36,000원, 서구25,320천원)에 속함

- 현재 우리구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5.8%로서 사실상 자주재원으로는 직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『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』에서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제일 마지막 까지 심사숙고하며 고심 끝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 생각되고 또한 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